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435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9일

발 의 자 : 이주웅 의원

찬 성 자 : 박찬원, 지광천
장문혁, 심현정
이명순 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21년 12월 16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외 3건,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 총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나.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
-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2. 심사안건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활동기간

○ 2021년 12월 16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이주웅 의원, 박찬원 의원, 지광천 의원,
장문혁 의원, 심현정 의원, 이명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수	내 용	비고
2021. 12.16. (목)	제1차 조례 규칙 특위 (10:00)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